

#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2024. 4. .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김지훈(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정보통신망 사용 과의존 범위를 보다 보편적인 매체인 스마트폰까지 확대하고,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각종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 →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
- 나. 각종 용어 재정비(안 제1조~제9조)
- 다. 올바른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청년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4. 5. ~ 4. 10. (6일간)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와 사회관계 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그 대상 범위와 세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인터넷 중독'으로 한정되어 있던 개념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 존'으로 수정하여 정보통신망 의존 대상과 범위를 광의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스마트폰이 주된 정보통신망 이용 매체로 자리잡은 현시대에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 \* 2023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개요

- 대상: 전국 학령 전환기(초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청소년 127만여 명
- 참여인원 : 전국 11,572개 초/중/고등학교, 총 1,276,789명
- (인터넷·스마트폰) 초등4년 399,129명
- (인터넷·스마트폰 및 사이버 도박) 중등1년 439,655명, 고등1년 438,005명
- 과의존 청소년 구분
- ① 위험사용자군
  - :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 및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 ② 주의사용자군
  - :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단계
- ③ 과의존 위험군
  - :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 합계에서 중복위험군 제함

#### ■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

- 2022년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소폭 하향함

#### 〈표1〉 유형별 과의존 청소년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과의존 위험군(A+B-C)	228,120	228,891	235,687	230,634
위험사용자군(A)	28,671	30,452	32,694	31,256
~ 주의사용자군(B)	283,363	282,319	291,116	281,369
중복위험군(C)	83,914	83,880	88,123	81,991

#### ※ 참고사항

### ■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괴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

- 2022년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임
- (인터넷) 2022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27만 명 중 약 19만명.

####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군 모두 매년 증가함

- (스마트폰)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5만 명\* 중 약 10%를 차지함 (\* 스마트폰 미소지자 제외)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율 >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증가율

#### 〈표2〉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인터넷	합계	175,496	183,228	188,978
과의존	위험사용자군	14,770	16,723	17,789
위험군	주의사용자군	160,726	166,505	171,189
스마트폰	합계	136,538	129,543	134,832
과의존 위험군	위험사용자군	13,901	13,729	14,905
	주의사용자군	122,637	115,814	119,927

#### ■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

- 사이버 도박문제 위험군

: 88만 명 중 약 2만9천명으로 약 3.3%를 차지함

- 위험군 청소년 수 : 중학생 > 고등학생 , 남자 > 여자

#### 〈표2〉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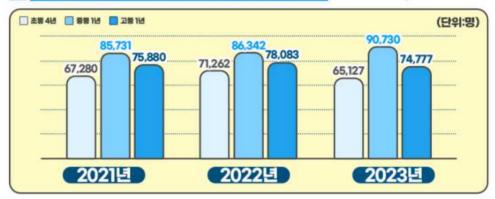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남	11,511	8,888	
여	4,798	3,641	
 소 계	16,309	12,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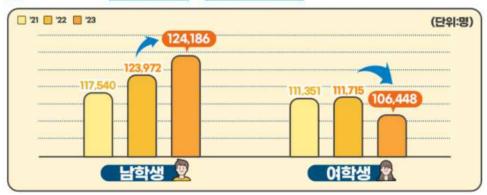
#### ※ 참고사항

■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중학생 집단과 남자 잡단에서 높게 나타나 표적집단별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중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추세 뚜렷 전년대비 4,388명 증가



### ☑ 과의존 진단 남자 청소년은 전년 대비 증가, 여자청소년은 전년 대비 감소



# 붙임1

## 관계법령

### ☑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 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 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